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구 미 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나.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업종의 사업자
- 다.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 라. 영업용 차량
- 2021. 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용 차량 소유자

3. 세목별 감면내용

가. 주민세 사업소분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1호가목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2)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제2호의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1호나목1)과 같은 목4)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 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나. 재산세(착한임대인)

- 1)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임대인
(단, 당초 임대차계약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인하전 3개월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 가)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사실이 확인 되는 임대인
 - 나)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 2021년도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를 포함한다)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가) 재산세 감면세율 산출

해당 임대부분 재산세액 × 임대율 인하율

※ 임대료 인하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비율을 말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

$$\frac{\text{임대료 인하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다) 감면은 아래의 한도내에서 감면한다.

(1) 임대료 인하율은 50%를 한도로 한다.

(2) 1항에 의해 산출된 감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3)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

다) 기존에 감면되는 재산세가 있는 경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4)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세

- 1) 2021년 제1기분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승용, 화물, 건설기계 등)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면제한다.
- 2)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연납하고 1)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환급 처리한다.

4.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5. 기타사항

- 가.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과 후 신청기간 내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처리 한다.

6. 참고사항

- 가. 감면 추계액 : 불 입
-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7)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8)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9)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다.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마. 기 타 :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통보

(도 세정담당관-2668, 2021. 2. 1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감면액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 감면은 ‘20년 부과건 참고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에 대한 감면은 ‘20년 부과건 참고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년 감면신청 실적 및 부과건 참고
- 영업용 자동차세 ‘20년 부과건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감면예상액(a)	1,658,000					1,658,000
세출	소 계(b)						
총 비용 (a-b)		1,658,000					1,65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도 비							
시 비		1,658,000					1,658,000
민 간							
기 타							
합 계		1,658,000					1,658,000

5. 부대의견

- 시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것으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을 확충

6. 작성자 : 세정과 도세계 김정욱(480-685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	감 면 세 목			비 고
	주 민 세 (사 업 소 분)	재 산 세 (건 축 물)	자 동 차 세	
개 인 사 업 자 · 중 소 법 인	100% 감면 (기본세율)			
집 합 금 지 · 영 업 제 한	100% 감면 (연면적세율)			
착 한 임 대 인		50% 감면 (백만원 한도)		
영 업 용 자 동 차			100% 감면	

2. 감면 예상액

(단위 : 천원)

세 목	대 상 자	감 면 액		비고
		산 출 내 역	세 액	
	합 계		1,658,000	
	소 계		1,180,000	
주 민 세	· 개인사업자	· 15,500건 × 50천원 = 775,000천원	775,000	
	· 중 소 법 인	· 6,000건 × 50천원 = 300,000천원	300,000	
	· 집 합 금 지 · 영 업 제 한	· 350건 × 300천원 = 105,000천원	105,000	
재 산 세	· 착한임대인	· 400건 × 500천원 = 200,000천원	200,000	
자동차세	· 영 업 용	· 7,779대 전년도 부과금액	278,0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별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⑳“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한 승 우
	담 당	김 봉 한
	담 당 자	김 정 욱 (480-6852)